

심 의 결 정 문

심의번호	INC-190207-073	게재일	2018.1월
제 목	OTOT '단독' 섹션에 연합뉴스 기사 게재		
U R L	http://otot.co.kr/content/board_list_info.php?boardIndex=20		
주 문	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'주의'로 결정한다.		
이 유	<p>1.오티오티는 대부분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싣고 있다. 심지어 'OTOT 단독'이라는 섹션도 연합뉴스 기사를 게재한 것이다. '단독'이라는 잘못된 표현으로 독자들이 오티오티의 자체 단독 기사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다.</p> <p>2. 오티오티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1조 제3항(언론의 책임)을 어겼다고 보며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/p>		
적용조항	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1조 제3항 (언론의 책임)		
<p>2019년 2월 7일</p> <p>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</p> <p>위원장 이민규</p> <p>위 원 김용, 박종수, 심재웅, 장하용, 황성기</p>			